

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12월 29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12. 19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12. 26
- 다. 상정일자 : 제8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12.26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경제과장 석명준)

가. 제 안 이 유

-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일부 규제조항 폐지

나. 주 요 골 자

- 가. 제9조(허가취소등) 제4항 “군에서 필요할 때”의 조항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애매모호한 규제조항을 폐지함은 조례의 입법취지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부

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